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. 12. 22 선고 2023가단733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성록, 정남규

변론 종결2023. 12. 1.

판결 선고2023. 12. 22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2022. 1. 3. 체결된 100,000,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, 2항 및 피고와 B 사이에 2022. 9. 29. 체결된 90,000,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피고는 원고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
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B은 2020. 6. 1. 종합부동산세 2,337,880,92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2023. 3. 24.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3,496,293,5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.

종합소득세	202001	2020-12-31	2021-08-02	2021-10-16	11,639,100	양천
양도소득세	202101	2021-01-31	2021-06-11	2021-12-01	2,852,760	양천
양도소득세	202101	2021-02-28	2021-07-12	2022-01-20	2,412,420	양천
종합부동산세	202006	2020-06-01	2021-05-18	2021-06-19	285,311,960	화성
부가가치세	202201	2022-10-01	2022-09-06	2022-09-30	12,791,240	동화성
부가가치세	202207	2022-10-26	2022-10-01	2022-10-25	6,247,840	동화성
종합부동산세	202106	2021-06-01	2021-11-19	2022-01-12	2,052,568,960	동화성
양도소득세	202101	2021-07-31	2021-12-09	2022-02-09	15,107,210	동안산
양도소득세	202101	2021-09-30	2022-01-10	2022-03-04	18,360,720	
양도소득세	202101	2021-10-31	2022-02-10	2022-04-09	8,928,220	
양도소득세	202101	2021-11-30	2022-03-10	2022-05-04	8,432,290	
양도소득세	202201	2022-01-31	2022-05-10	2022-06-25	11,352,090	
양도소득세	202101	2021-11-30	2022-05-10	2022-06-25	233,580	
양도소득세	202101	2021-11-30	2022-04-11	2022-08-09	10,064,020	
양도소득세	202201	2022-02-28	2022-06-09	2022-08-11	682,600	
양도소득세	202101	2021-12-31	2022-06-09	2022-08-12	1,351,610	
양도소득세	201901	2019-01-31	2022-08-10	2022-10-12	7,336,640	
양도소득세	202201	2022-04-30	2022-09-01	2023-01-10	7,637,820	
양도소득세	202201	2022-02-28	2022-10-11	2023-01-10	5,138,970	
양도소득세	202201	2022-02-28	2022-10-11	2023-01-10	1,481,840	
종합부동산세	202206	2022-06-01	2022-11-20	2023-01-15	1,021,737,090	
양도소득세	202201	2022-07-21	2022-12-08	2023-02-07	1,624,600	
합계	29건	3,493,293,580				

나. 한편 B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인(C생)을 두었는데 2021. 8. 11. 피고와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년5212 이혼조정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.

- (1) B과 피고는 이혼한다.
- (2) B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3,000만 원을 지급하되, 2021. 8. 부터 월 300만 원씩 15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
- (3) 재산분할로 B과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.
- (4) B은 피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2021. 8. 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
- (5) B은 자녀의 병원비 및 치료비로 위 양육비로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초과된 금액 중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며, 향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등록금 및 매 학기 학비의 절반을 피고에게 지급한다.
- (6) B은 피고에게 자녀의 과거 양육비로 2022. 3. 31.까지 6,000만 원을 지급한다.

다. 그 뒤 B은 2022. 1. 3. D으로부터 지급받을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하였고(이하 '이 사건 1억 원'이라 한다), 2022. 9. 29.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9,000만 원 수표를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(이하 '이 사건 9,000만 원'이라 한다).

라. B은 2022. 1. 3.자 기준으로 적극재산으로 약 50,161,911,490원 상당의, 2022. 9. 29.자 기준으로 약 50,961,911,490원 상당의 부동산 및 대여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위 각 기준일 당시 소극재산으로 약 53,052,046,54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및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B이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송금하고, 이 사건 9,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, 이와 같이 B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1억 9,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

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9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(1)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가 B에게 대여하였던 6,000만 원, 이혼조정에 따른 자녀 등록금 1,400만 원, 자녀 대학 생활비 2,400만 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, 이 사건 9,000만 원은 이혼조정에 따른 위자료 3,000만 원 및 과거 양육비 6,000만 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.

(2) 피고가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1억 원 및 9,000만 원이 송금될 당시 이미 B의 종합부동산세 합계 2,337,880,920원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.

나. 이 사건 1억 원 부분에 관한 판단

(1) 먼저,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입금한 행위는 B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판단된다.

(가) 피고는 B에게 송금한 2021. 11. 15. 및 2021. 12. 9. 합계 6,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B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하기 직전인 2021. 11. 7. 6,000만 원, 2021. 11. 26. 차용금 명목으로 7,750만 원을 각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에게 송금한 위 6,000만 원은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 또는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.

(나) 또한 피고는 이혼조정에 따른 자녀 등록금 1,400만 원, 자녀 대학 생활비 2,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피고가 이 사건 1억 원 송금 당시 13살에 불과한 자녀의 대학

등록금 및 대학 생활비를 지급하였음을 쉽게 믿기 어렵고, 가사 피고가 자녀 등록금 및 생활비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녀의 성년 이후의 학비 또는 생활비에 해당하여 피고 및 자녀에 대한 증여행위에 포함된다.

(다) B이 다액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및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의 이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.

(2) 이와 같이 B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2023. 1. 3.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(3)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피고가 B과 이혼한지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(4) 따라서,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23. 1. 3.자 1억 원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이 사건 9,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

다음으로,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9,000만 원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가 B으로부터 이혼조정에 따라 위자료 및 자녀 과거 양육비로 9,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와 이혼할 당시 위자료 3,000만 원 및 자녀 과거 양육비 6,000만 원 합계 9,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, 위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액수가 과도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, B이 이혼 이후 2021. 4. 1.부터 2022. 9. 24.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9,000만 원 이외에도 약 2억 8,733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에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9,000만 원의 경우 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B이 피고에게 이 사건

9,0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서창석